

定 款

주식회사 313데브그룹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313데브그룹' (313 DEVGROUP)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 각 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파주시' 내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본점, 지점, 출장소, 사무소 그리고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단,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내로 한다.
-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다음날부터 10년 이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함)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 12 조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내로 한다.
-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을 본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나. 특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월 이상 상회하는 경우

제 13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명의개서 및 대리인】

- ①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④ 본 회사는 제3항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스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7 조 【주권의 불소지 및 불발행】 본 회사는 주주가 해당 주권의 발행을 원치 않을 경우 주권의 불발행에 대한 뜻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주식의 양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 19 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20 조 【자기주식의 취득】

-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이사가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 21 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 22 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

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여 정하며 끝수는 버린다.

제 23 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 24 조 【주식의 소각】

- ① 당 회사의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26 조 【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 2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전환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사회는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또는 경영상 필요로 그 전략적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법인,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바로 전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으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 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명의개서 및 대리인),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2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30 조 【소집시기】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사업 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 3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 3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33 조 【주주의 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

- 1. 정관변경
- 2. 수권자본의 증가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 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5. 이사 및 감사의 해임
- 6. 자본의 감소. 다만, 결손의 보존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8.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 ④ 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8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과 이사회

제 3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을 말하며, 그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 선임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하며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제 4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4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2인 이하의 경우 발기인총회,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 4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5 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 ① 이사는 업무 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7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에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제 48 조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① 이사 및 감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③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 또는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 및 감사의 책임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본 정관 제43조 및 제44조에 관한 이사회 규정은 이사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회의주관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0 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51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52 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 ②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임원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④ 임원의 유족보상 및 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3 조 【직무발명의 보상】 본 회사는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한 직무상 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별도의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에 공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6 장 계 산

제 54 조 【사업 연도】 본 회사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년 사업 연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7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 간의 배당률을 달리하여 차등하여 배당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8 조 【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현물)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은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1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9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인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 2 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설립연월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위 “주식회사 313테브그룹” 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4년 03월 21일

발기인 신은진 (810203-20473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25, 116동 1402호(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발기인 이동민 (790415-15587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25, 116동 1402호(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아파트)

